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68950 판결 [계약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박훈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박상우, 장세윤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62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D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 제작·설치·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조건 ‘월 마감 익월 말일 현금’, 착공일 2017. 9. 25., 준공일 2019. 8. 31.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피고는 2019. 8.경 준공일을 2019.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계약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

다. 원·피고는 2019. 12.경 재차 준공일을 2020. 2. 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계약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20.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장비를 철수시켰다.

마. 각 대금 지급은 원고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신탁회사에 지급신청을 하면, 신탁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는 2018. 6. 29.부터 2020. 1. 22.까지 합계 194,834,452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대금에는 2019. 8.경까지 정산되어야 할 대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6호증, 을 1,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당초의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2회에 걸쳐 준공기한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최초의 준공기한인 2019. 8. 31. 이후 추가로 자재임대료 19,693,003원을 지출했고, 당초 예정한 시공범위 외에 추가로 개구부 87개소에 대한 자재비 6,090,000원을 지출했고, 당초의 준공기한 이후의 현장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0,500,000원을, 본사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850만 원을 각 지출했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기타 간접비로 3,837,351원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기간을 변경하면서 계약금액 범위 내에 있는 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연장과 범위 추가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종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 연장에 따른 임대료, 추가 개구부에 대한 자재비, 현장 상주인력과 본사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켜 기성 잔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 ‘피고가 제안한 14,960,000원의 제안을 원고가 거절하여, 일체 최종 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의 사전 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금 지급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에 근거한 계약상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시공 부분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에 추가 대금 지급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 ·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 변경 외에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계약 내용에 언급된 바 없었다. 가령 하도급 변경 계약서(2차)에는 “계약금액: 변경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계약의 목적이 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산출된 물량과 단가 등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자재를 회수하는 기한이 늦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재임대 비용 증가가 생겼을 수는 있으나,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산정금액도 최초 청구시에는 약 56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1960만 원으로 약 4배로 증가되었는데, 각 산정근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일부 개구부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추가 대금 지급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합의된 단가와 수량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현장 상주인력과, 본사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에도, 추가 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그 대금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간접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공사대에 관한 직접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간접비 상당의 대금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